

**붙임 3**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체크리스트**

**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**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(법 제82조)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법 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법 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공공기관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b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(비해당시 이하 작성 불요)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제3호(공직자)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
<b>2.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(단, 퇴직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)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(예시)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 사용, 수당·여부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	
<b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b>3-2. 작성일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b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b>4-2.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b>4-3. 권익위법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</b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2022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지 원 자

(서명)